

창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11232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1. F

2. G

3. H

4. I

5. J

6. K

변론 종결 2018. 8. 23.

판결 선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원고별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2. 4.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원고별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2. 4. 2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 1) 원고들은 망 L(2013. 1. 27. 사망)의 처 또는 자녀들이다.
- 2) 망 L,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망 M(2014. 10. 28. 사망), 피고 K는 망N(1969. 9. 10. 사망)과 망 O(1995. 2. 10. 사망)의 자녀이다.
- 3) 피고 J는 망 M의 자녀로서 망 M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부동산의 등기관계

- 1) 경남 김해군 P 답 2,994㎡는 1972. 12. 26. 망 O 앞으로 1972.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당시는 농지개량으로 인한 분할 전이었기때문에 '경남 김해군 Q 답 711평'이었다).
- 2) 경남 김해군 P 답 2,994㎡는 1999. 10. 27. 분할로 인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과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농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 A 명의의 주택

1) 이 사건 대지 위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15.26㎡,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헛간 32.5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1995. 3. 27. 망 L 앞으로 1995.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현재 이 사건 주택은 2013. 6. 13. 원고 A 앞으로 2013. 1. 17.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는 망 L의 고모 R이다. 이 사건 주택은 1993. 6. 15. 사용승인이 되었다(이 사건 주택은 R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위와 같이 L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L은 망 O과 함께 생활하면서 망 O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혼자 사는 고모 R의 집이 철거되는 바람에 R도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O은 더 넓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1992. 4. 28. 망 L에게 이 사건 대지 및 농지를 증여하였고, R은 망 L에게 철거에 따른 이주권을 증여하였다. 망 L은 R의 이주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뒤 망 O과 R이 사망할때까지 동거 부양하였고,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망 O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은 망 L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1992. 4. 28.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증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망 L과 원고들은 1992. 4. 28.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지 및 농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2. 4.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

원고들은 1992. 4. 28. 망 O이 이 사건 대지 및 농지를 망 L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S, T의 각 증언에 의하면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이나 장소를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증여계약의 중요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워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증거들의 기재 내용이나 증언 내용대로 망 O이 주변 사람들이나 망 L에게 땅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망 L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대지 및 농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 건축 이후 이 사건 대지 및 농지가 분할등기 되었음에도 망 L이나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O은 확정적, 종국적으로 망 L에게 법률상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점유 취득시효 완성 여부

가) 갑 제4,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망 L, 망L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농지도 경작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지 및 농지는 원고들 및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으로서공유관계에 있고,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대지 및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 N과 망 O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망 L, 피고 G, 피고 H, 피고 I, 망 M, 피고 K는 망 N과 망 U 사이에서, 피고 F는 망 U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각 출생한 자녀들인데, 호적에 망 N과 망 O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등재한 것이므로, 망 O과 친생자 관계에 있지 않은 피고들(피고 J의 경우 망 M)은 상속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양의 경우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형식상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에서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고에 대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또 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함인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나타나 있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므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등 참조). 망 O이 망 L,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망 M, 피고 K와 친생자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이상 적어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은 있다.

피고들이 망 O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

1) '2013. 1. 17.'은 '2013. 1. 27.'의 오류로 보인다.